

『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
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장애등급에서 장애의 정도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과 통일성을 제고하고,
-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 선정기준을 장애등급구간이 아닌 장애의 정도로 변경하여 행정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해당 용어 변경(제6조)
-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명칭을 특정 대상자를 지칭하지 않는 용어로 변경(제1조, 제4조, 제5조)
 - 당초 : 장애인 등 → 우선대상자
- 관계법령 상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변경(별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노인장애인과,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9. 7. 1. 시행)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,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